# 2019학년도 전기 졸업유예 신청 안내

<교무처, 2019.01.16.>

## I 졸업유예

□ 2년제 4학기, 3년제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한자가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,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

## 졸업유예 기간 및 조건

- □ 유예기간 : 학기 단위로 1회만 가능
- □ 유예조건

II

- 졸업유예자는 최소 1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
  - \* 졸업유예자는 전공(NCS/현장중심)교과목, 교양·직업기초 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재학생과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
- 졸업유예자의 등록금은 졸업탈락자와 동일하게 적용(학점당 등록)
- 졸업유예자는 <u>졸업유예 기간에 휴학 불가</u>

### Ⅲ 졸업유예 신청 절차

- □ 신청대상 :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
- -졸업탈락자 및 성인학습자 별도반 제외
- □ 신청자격 : 2년제/ 3년제 졸업학점을 충족하고, 각각 4학기/ 6학기 이상 이수한 자
- □ 신청기간 : 2019. 01. 16.(수) ~ 01. 23.(수)
- □ 신청방법 : 졸업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- \*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
- □ 진행절차 : 졸업유예 신청자는 최종 검토 후 졸업 사정(심사)시 졸업유예자로 별도 처리

### 유의사항

IV

- □ 졸업유예를 허가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수강 또는 미등록한 경우 졸업유예를 교무처 직권 으로 취소하고, 당초 졸업예정 시기로 졸업 처리
- □ 졸업유예를 허가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또는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졸업유예 취소 불가
- □ 학기 개시 후 질병, 군 입대, 취업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<졸업유예취소 신청서>를 제출하여 취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졸업유예학기의 졸업자로 처리
  - \* 졸업유예 취소 시, 등록금 반환 불가